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38호 2022. 9. 5.(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44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2-14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2
고성군 공고 제2022-1448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2
고성군 공고 제2022-1449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45
고성군 공고 제2022-1451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74
고성군 공고 제2022-1454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1
고성군 공고 제2022-146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2-15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105
--------------------------------	-----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445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인구청년정책, 산림휴양 조성, 고속철도 지원 등 민선8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나.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장 직급상향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을 적기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 1) 총 정원: 776명 → 749명 (증3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 20명 (증3명)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1) 집행기관별: 729명(변동 없음)
 - 가) 본 청: 355명 → 353명 (감2명)
 - 나) 직속기관: 139명 → 141명 (증2명)
 - 2) 의회사무기구: 17명 → 20명(증3명)
- 다.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 1) 직급별(일반직): 746명 → 749명(증3명)
 - 가) 4급 : 4명 → 5명 (증1명)
 - 나) 4~5급 : 1명 → 0명 (감1명)
 - 다) 5급 : 43명 → 44명 (증1명)
 - 라) 6급 이하 : 661명 → 662명 (증1명)

마) 연구사: 4명 → 5명 (증1명)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746명이며” 를 “749명이며” 로 하고 제2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7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안)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53	20	141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48	20	115	40	194
4급	5	4		1		
5급	44	18	3	6	3	14
6급 이하	662	326	17	102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746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729명</u></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17명</u></p> <p>[별표3]</p> <p>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749명</u>이며----- -----.</p> <p>1. -----</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20명</u></p> <p>[별표3]</p> <p>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 회 사무과</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 속 기 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읍 · 면</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746</td><td style="text-align: center;">355</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d style="text-align: center;">139</td><td style="text-align: center;">41</td><td style="text-align: center;">194</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무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군 수</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715</td><td style="text-align: center;">351</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d style="text-align: center;">113</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d style="text-align: center;">194</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4</td><td style="text-align: center;">4</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5급</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td style="text-align: center;">43</td><td style="text-align: center;">18</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661</td><td style="text-align: center;">329</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d style="text-align: center;">101</td><td style="text-align: center;">37</td><td style="text-align: center;">18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경력관</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급상당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4</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관</td><td style="text-align: center;">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사</td><td style="text-align: center;">4</td><td style="text-align: center;">2</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25</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25</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관</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사</td><td style="text-align: center;">24</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24</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 면	총 계	746	355	17	139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4급	4	4					4~5급	1			1			5급	43	18	3	5	3	14	6급 이하	661	329	14	101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총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청</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 회 사무과</th> <th style="text-align: center;">직 속 기 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업소</th> <th style="text-align: center;">읍 · 면</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총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749</td><td style="text-align: center;">353</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d style="text-align: center;">141</td><td style="text-align: center;">41</td><td style="text-align: center;">194</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정무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군 수</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717</td><td style="text-align: center;">348</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d style="text-align: center;">115</td><td style="text-align: center;">40</td><td style="text-align: center;">194</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급</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 style="text-align: center;">4</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4~5급</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5급</td><td style="text-align: center;">44</td><td style="text-align: center;">18</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급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662</td><td style="text-align: center;">326</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d style="text-align: center;">102</td><td style="text-align: center;">37</td><td style="text-align: center;">180</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경력관</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6</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6급상당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관</td><td style="text-align: center;">0</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사</td><td style="text-align: center;">5</td><td style="text-align: center;">3</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직 계</td><td style="text-align: center;">25</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25</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관</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1</td><td></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지도사</td><td style="text-align: center;">24</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24</td><td></td><td></td></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 면	총 계	749	353	20	141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48	20	115	40	194	4급	5	4		1			4~5급	-			-			5급	44	18	3	6	3	14	6급 이하	662	326	17	102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 면																																																																																																																																																																																																																																																							
총 계	746	355	17	139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4급	4	4																																																																																																																																																																																																																																																											
4~5급	1			1																																																																																																																																																																																																																																																									
5급	43	18	3	5	3	14																																																																																																																																																																																																																																																							
6급 이하	661	329	14	101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4	2		1	1																																																																																																																																																																																																																																																								
연구관	0																																																																																																																																																																																																																																																												
연구사	4	2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 · 면																																																																																																																																																																																																																																																							
총 계	749	353	20	141	41	194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348	20	115	40	194																																																																																																																																																																																																																																																							
4급	5	4		1																																																																																																																																																																																																																																																									
4~5급	-			-																																																																																																																																																																																																																																																									
5급	44	18	3	6	3	14																																																																																																																																																																																																																																																							
6급 이하	662	326	17	102	37	180																																																																																																																																																																																																																																																							
전문경력관	6			6																																																																																																																																																																																																																																																									
별정직 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연구직 계	5	3		1	1																																																																																																																																																																																																																																																								
연구관	0																																																																																																																																																																																																																																																												
연구사	5	3		1	1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1			1																																																																																																																																																																																																																																																									
지도사	24			24																																																																																																																																																																																																																																																									

붙임 1 **비용추계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4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5년간)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3]의 2022년 공무원봉급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5급(상한액×80%) 1명, 6급(15호봉) 1명, 연구사(5호봉) 1명으로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세출	인건비	138,909	141,687	144,520	147,411	150,359
세입	교부세	138,909	141,687	144,520	147,411	150,359

※인상률(2%) 적용

- 2023년 138,909천원 예산 소요
 - 5급(연봉제): 1명 × 83,632천원 × 80% = 66,905천원
 - 6급(15호봉): 1명 × 43,018천원
 - 연구사(5호봉): 1명 × 28,986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군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355명→353명(감2)
- 의회사무과: 17명→20명(증3)
- 직속기관: 139명→141명(증2)

2) 직급별 정원 조정

- 4급: 4명→5명(증1)
- 4~5급: 1명→0명(감1)
- 5급: 43명→44명(증1)
- 6급(일반직): 177명→178명(증1)
- 연구사: 4명→5명(증1)

3) 직급·직렬별 세부내역: 별첨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전)

기 관 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6	355	17	139	41	194
정 무 직	1	1	-	-	-	-
일반직 계	715	351	17	113	40	194
일반직 4급 소계	4	4	-	-	-	-
서기관	1	1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3	3	-	-	-	-
일반직 4~5급 소계	1	-	-	1	-	-
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	1	-	-	1	-	-
일반직 5급 소계	43	18	3	5	3	14
행정	-	-	-	-	-	-
의무	1	-	-	1	-	-
행정.사회복지	3	3	-	-	-	-
행정.공업.환경	1	1	-	-	-	-
행정.해양수산	-	-	-	-	-	-
행정.시설	4	2	2	-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	-	-	-	-	-
행정.농업.시설	10	5	1	-	2	2
행정.시설.보건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2	-	-	-	-	2
행정.농업.녹지	1	1	-	-	-	-
행정.농업.녹지.사회복지	1	-	-	-	-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	-	-	1	-
행정.농업.사회복지	1	-	-	-	-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보건	4	-	-	-	-	4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	-	-	-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	-	-	-	1
농업.농촌지도	1	-	-	1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	-	-
행정.공업.시설	3	3	-	-	-	-
농업.녹지.시설	1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	-	-	-
일반직 6급 소계	177	94	3	21	8	51
행정	20	18	2	-	-	-
세무	3	2	-	-	-	1
사회복지	2	2	-	-	-	-
시설	7	6	-	-	1	-

녹지	1	1	-	-	-	-
해양수산	2	2	-	-	-	-
환경	2	2	-	-	-	-
보건진료	2	-	-	2	-	-
운전	4	4	-	-	-	-
사무운영	-	-	-	-	-	-
선박항해운영	-	-	-	-	-	-
기계운영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	-	-	-	-	-
행정.농업	21	-	-	-	2	19
행정.전산	1	1	-	-	-	-
행정.시설	24	22	-	-	2	-
행정.공업	1	1	-	-	-	-
행정.해양수산	3	3	-	-	-	-
행정.사회복지	11	8	-	-	-	3
행정.보건	1	-	-	1	-	-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	-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세무	7	4	-	-	-	3
행정.농업.전산	1	-	-	1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	5	1	1	2	-	1
행정.환경.공업	7	3	-	1	2	1
행정.농업.해양수산	5	-	-	-	-	5
행정.농업.녹지	3	3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5	-	-	5	-	-
행정.사회복지.보건	6	3	-	-	-	3
행정.사회복지.간호	2	-	-	-	-	2
행정.시설.보건	1	1	-	-	-	-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6	-	-	-	-	6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세무	4	-	-	-	-	4
행정.공업.시설	1	-	-	-	1	-
보건.간호	2	-	-	2	-	-
일반직 7급 소계	213	111	8	31	12	51
행정	40	28	6	-	2	4

농업	3	-	-	3	-	-
세무	3	3	-	-	-	-
시설	15	9	-	-	2	4
녹지	1	1	-	-	-	-
해양수산	3	3	-	-	-	-
수의	2	-	-	2	-	-
전산	-	-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2	-	-	2	-	-
간호	1	-	-	1	-	-
보건진료	4	-	-	4	-	-
환경	1	1	-	-	-	-
공업	2	1	-	-	1	-
사회복지	8	2	-	-	-	6
의료기술	2	-	-	2	-	-
운전	6	3	1	1	1	-
숙기	1	-	1	-	-	-
사무운영	-	-	-	-	-	-
행정.농업	18	2	-	2	2	14
행정.전산	2	2	-	-	-	-
행정.시설	20	19	-	-	1	-
행정.공업	1	-	-	-	1	-
행정.환경	2	2	-	-	-	-
행정.해양수산	3	3	-	-	-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	-	-	-	-	-
농업.녹지	1	1	-	-	-	-
시설.녹지	1	1	-	-	-	-
행정.사회복지	8	6	-	-	-	2
해양수산.시설	2	2	-	-	-	-
행정.보건	3	1	-	-	-	2
보건.약무	1	-	-	1	-	-
보건.간호	1	-	-	1	-	-
행정.세무	11	5	-	-	-	6
행정.농업.전산	2	-	-	1	-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환경.공업	4	2	-	-	1	1
행정.농업.녹지	2	2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7	-	-	4	-	3
행정.사회복지.보건	7	3	-	-	-	4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	-	-	-
행정.시설.녹지	1	-	-	-	1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2	2	-	-	-	-
행정.농업.시설	6	3	-	3	-	-
행정.농업.시설.보건	2	-	-	-	-	2
일반직 8급 소계	189	81	3	42	12	51
행정	26	19	1	-	3	3
농업	2	-	-	2	-	-
세무	2	2	-	-	-	-
전산	1	1	-	-	-	-
공업	5	3	-	-	2	-
시설	12	4	-	-	-	8
해양수산	3	3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10	2	-	8	-	-
간호	5	-	-	5	-	-
보건진료	6	-	-	6	-	-
환경	1	1	-	-	-	-
사회복지	10	1	-	-	-	9
의료기술	5	-	-	5	-	-
운전	4	2	1	-	1	-
속기	1	-	1	-	-	-
전기운영	2	1	-	-	1	-
행정.농업	11	1	-	3	-	7
행정.전산	1	-	-	-	-	1
행정.시설	17	17	-	-	-	-
행정.환경	2	-	-	-	1	1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공업	2	1	-	-	1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2	2	-	-	-	-
행정.사회복지	3	2	-	-	-	1
행정.보건	3	-	-	1	-	2
보건.간호	4	-	-	4	-	-
간호.의료기술	1	-	-	1	-	-
행정.세무	5	1	-	-	-	4
환경.해양수산	1	1	-	-	-	-
행정.농업.세무	1	-	-	-	-	1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농업.시설	6	3	-	1	-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환경.공업	4	1	-	1	2	-
환경.공업.보건	1	-	-	-	1	-
행정.농업.녹지	2	2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6	-	-	2	-	4
행정.사회복지.보건	8	3	-	-	-	5
행정.시설.보건	1	1	-	-	-	-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일반직 9급 소계	82	43	-	7	5	27
행정	8(3)	6(1)	-	-	-	2(2)
세무	1	1	-	-	-	-
시설	4	2	-	-	-	2
보건	1	-	-	1	-	-
사회복지	13	5	-	-	-	8
공업	1	-	-	-	1	-
녹지	1	1	-	-	-	-
운전	4	4	-	-	-	-
속기	-	-	-	-	-	-
사무운영	3	1	-	1	-	1
기계운영	1	1	-	-	-	-
행정.농업	3	-	-	2	-	1
행정.시설	10	8	-	-	2	-
행정.환경	1	-	-	-	-	1
행정.세무	1	-	-	-	-	1
시설.방재안전	1	1	-	-	-	-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사회복지	5	2	-	-	-	3
행정.보건	2	1	-	-	-	1
보건.간호	1	-	-	1	-	-
행정.사서	1	1	-	-	-	-
방송통신.전산	1	1	-	-	-	-
행정.환경.공업	2	1	-	-	1	-
행정.농업.녹지	3	2	-	-	1	-
행정.사회복지.보건	6	1	-	-	-	5
행정.시설.보건	1	1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2	-	-	2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1	1	-	-	-	-
전문경력관 소계	6	-	-	6	-	-
다군(농기계수리)	6	-	-	6	-	-
별정직 계	1	1	-	-	-	-
별정직 6급상당 소계	1	1	-	-	-	-

비서요원	1	1	-	-	-	-
연구직 계	4	2	-	1	1	-
연구사 소계	4	2	-	1	1	-
기록연구	1	1	-	-	-	-
학예연구	2	1	-	-	1	-
농업연구	1	-	-	1	-	-
지도직 계	25	-	-	25	-	-
지도관 소계	1	-	-	1	-	-
농촌지도관	1	-	-	1	-	-
지도사 소계	24	-	-	24	-	-
농촌지도	24	-	-	24	-	-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후)

기 관 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9	353	20	141	41	194
정 무 직	1	1	-	-	-	-
일반직 계	717	348	20	115	40	194
일반직 4급 소계	5	4	-	1	-	-
서기관	1	1	-	-	-	-
서기관.기술서기관	4	3	-	1	-	-
일반직 4~5급 소계	-	-	-	-	-	-
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료기술	-	-	-	-	-	-
일반직 5급 소계	44	18	3	6	3	14
행정	-	-	-	-	-	-
의무	-	-	-	-	-	-
행정.사회복지	3	3	-	-	-	-
행정.공업.환경	1	1	-	-	-	-
행정.해양수산	-	-	-	-	-	-
행정.시설	4	2	2	-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	-	-	-	-	-
행정.농업.시설	10	5	1	-	2	2
행정.시설.보건	-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2	-	-	-	-	2
행정.농업.녹지	1	1	-	-	-	-
행정.농업.녹지.사회복지	1	-	-	-	-	1
행정.공업.시설.환경	1	-	-	-	1	-
행정.농업.사회복지	1	-	-	-	-	1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보건	4	-	-	-	-	4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	-	-	-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	-	-	-	1
농업.농촌지도	1	-	-	1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	-	-
행정.공업.시설	3	3	-	-	-	-
농업.녹지.시설	1	1	-	-	-	-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	-	-	-
행정.간호.보건.의료기술	1	-	-	1	-	-
의무.간호.보건.의료기술	1	-	-	1	-	-
일반직 6급 소계	178	94	4	21	8	51
행정	21	18	3	-	-	-
세무	3	2	-	-	-	1

사회복지	2	2	-	-	-	-
시설	7	6	-	-	1	-
녹지	1	1	-	-	-	-
해양수산	2	2	-	-	-	-
환경	2	2	-	-	-	-
보건진료	2	-	-	2	-	-
운전	3	3	-	-	-	-
사무운영	-	-	-	-	-	-
선박항해운영	-	-	-	-	-	-
기계운영	-	-	-	-	-	-
행정.전산.방송통신	3	3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	-	-	-	-	-
행정.농업	21	-	-	-	2	19
행정.전산	1	1	-	-	-	-
행정.시설	25	23	-	-	2	-
행정.공업	1	1	-	-	-	-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사회복지	11	8	-	-	-	3
행정.보건	2	-	-	2	-	-
농업.녹지	1	1	-	-	-	-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	-	-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세무	7	4	-	-	-	3
행정.농업.전산	1	-	-	1	-	-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농촌지도	2	-	-	2	-	-
행정.농업.시설	5	1	1	2	-	1
행정.환경.공업	7	3	-	1	2	1
행정.농업.해양수산	5	-	-	-	-	5
행정.농업.녹지	3	3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4	-	-	4	-	-
행정.사회복지.보건	6	3	-	-	-	3
행정.사회복지.간호	2	-	-	-	-	2
행정.시설.보건	1	1	-	-	-	-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6	-	-	-	-	6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	-	-	-	2
행정.농업.세무	4	-	-	-	-	4
행정.공업.시설	1	-	-	-	1	-
보건.간호	2	-	-	2	-	-
일반직 7급 소계	212	109	9	31	12	51

행정	38	25	7	-	2	4
농업	3	-	-	3	-	-
세무	3	3	-	-	-	-
시설	15	9	-	-	2	4
녹지	1	1	-	-	-	-
해양수산	3	3	-	-	-	-
수의	2	-	-	2	-	-
전산	-	-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1	-	-	1	-	-
간호	2	-	-	2	-	-
보건진료	4	-	-	4	-	-
환경	1	1	-	-	-	-
공업	2	1	-	-	1	-
사회복지	10	2	-	2	-	6
의료기술	-	-	-	-	-	-
운전	6	3	1	1	1	-
속기	1	-	1	-	-	-
사무운영	-	-	-	-	-	-
행정.농업	18	-	-	2	2	14
행정.전산	2	2	-	-	-	-
행정.시설	21	20	-	-	1	-
행정.공업	1	-	-	-	1	-
행정.환경	2	2	-	-	-	-
행정.해양수산	3	3	-	-	-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	-	-	-	-	-
농업.녹지	1	1	-	-	-	-
시설.녹지	1	1	-	-	-	-
행정.사회복지	8	6	-	-	-	2
해양수산.시설	2	2	-	-	-	-
행정.보건	3	1	-	-	-	2
보건.약무	1	-	-	1	-	-
보건.간호	2	-	-	2	-	-
행정.세무	10	4	-	-	-	6
행정.농업.전산	2	-	-	1	-	1
행정.농업.농촌지도	3	-	-	3	-	-
행정.환경.공업	4	2	-	-	1	1
행정.농업.녹지	2	2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6	-	-	3	-	3
행정.사회복지.보건	8	4	-	-	-	4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	-	-	-

행정.시설.녹지	1	-	-	-	1	-
농업.수의.농촌지도	1	-	-	1	-	-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2	2	-	-	-	-
행정.농업.시설	6	3	-	3	-	-
행정.농업.시설.보건	2	-	-	-	-	2
일반직 8급 소계	190	81	3	43	12	51
행정	26	19	1	-	3	3
농업	3	-	-	3	-	-
세무	2	2	-	-	-	-
전산	1	1	-	-	-	-
공업	5	3	-	-	2	-
시설	12	4	-	-	-	8
해양수산	3	3	-	-	-	-
방송통신	1	1	-	-	-	-
보건	8	-	-	8	-	-
간호	5	-	-	5	-	-
보건진료	6	-	-	6	-	-
환경	1	1	-	-	-	-
사회복지	10	1	-	-	-	9
의료기술	5	-	-	5	-	-
운전	4	2	1	-	1	-
속기	1	-	1	-	-	-
전기운영	1	-	-	-	1	-
행정.농업	11	1	-	3	-	7
행정.전산	1	-	-	-	-	1
행정.시설	19	19	-	-	-	-
행정.환경	2	-	-	-	1	1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공업	2	1	-	-	1	-
환경.공업	2	2	-	-	-	-
시설.방재안전	2	2	-	-	-	-
행정.사회복지	3	2	-	-	-	1
행정.보건	5	2	-	1	-	2
보건.간호	4	-	-	4	-	-
간호.의료기술	1	-	-	1	-	-
행정.세무	4	-	-	-	-	4
환경.해양수산	1	1	-	-	-	-
행정.농업.세무	1	-	-	-	-	1
농업.농촌지도.농업연구	1	-	-	1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농업.시설	6	3	-	1	-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	-	-	-
행정.농업.방송통신	1	1	-	-	-	-
행정.환경.공업	4	1	-	1	2	-
환경.공업.보건	1	-	-	-	1	-
행정.농업.녹지	3	3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7	-	-	3	-	4
행정.사회복지.보건	7	2	-	-	-	5
행정.시설.보건	-	-	-	-	-	-
행정.농업.농촌지도	1	-	-	1	-	-
행정.농업.시설.보건	1	-	-	-	-	1
일반직 9급 소계	82	42	1	7	5	27
행정	8	6	-	-	-	2(2)
세무	1	1	-	-	-	-
시설	4	2	-	-	-	2
보건	1	-	-	1	-	-
사회복지	13	5	-	-	-	8
공업	1	-	-	-	1	-
녹지	1	1	-	-	-	-
운전	4	4	-	-	-	-
숙기	-	-	-	-	-	-
사무운영	3	-	1	1	-	1
기계운영	1	1	-	-	-	-
행정.농업	3	-	-	2	-	1
행정.시설	10	8	-	-	2	-
행정.환경	1	-	-	-	-	1
행정.세무	1	-	-	-	-	1
시설.방재안전	1	1	-	-	-	-
행정.해양수산	2	2	-	-	-	-
행정.사회복지	5	2	-	-	-	3
행정.보건	2	1	-	-	-	1
보건.간호	1	-	-	1	-	-
행정.사서	1	1	-	-	-	-
방송통신.전산	1	1	-	-	-	-
행정.환경.공업	2	1	-	-	1	-
행정.농업.녹지	3	2	-	-	1	-
행정.사회복지.보건	6	1	-	-	-	5
행정.시설.보건	1	1	-	-	-	-
보건.간호.의료기술	2	-	-	2	-	-
행정.농업.사회복지	2	-	-	-	-	2
행정.공업.시설	1	1	-	-	-	-
전문경력관 소계	6	-	-	6	-	-
다군(농기계수리)	6	-	-	6	-	-

별정직 계	1	1	-	-	-	-
별정직 6급상당 소계	1	1	-	-	-	-
비서요원	1	1	-	-	-	-
연구직 계	5	3	-	1	1	-
연구사 소계	5	3	-	1	1	-
기록연구	1	1	-	-	-	-
학예연구	3	2	-	-	1	-
농업연구	1	-	-	1	-	-
지도직 계	25	-	-	25	-	-
지도관 소계	1	-	-	1	-	-
농촌지도관	1	-	-	1	-	-
지도사 소계	24	-	-	24	-	-
농촌지도	24	-	-	24	-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정원 4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5년간)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3]의 2022년 공무원봉급표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5급(상한액×80%) 1명, 6급(15호봉) 1명, 연구사(5호봉) 1명으로 추계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세출	인건비	138,909	141,687	144,520	147,411	150,359
세입	교부세	138,909	141,687	144,520	147,411	150,359

※인상률(2%) 적용

- 2023년 138,909천원 예산 소요
 - 5급(연봉제.): 1명×83,632천원×80%=66,905천원
 - 6급(15호봉): 1명×43,018천원
 - 연구사(5호봉): 1명×28,986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2021. 12. 16.>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48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단·담당관·과의 신설, 폐지, 분리, 명칭변경

- 1) 신 설: 인구청년추진단
- 2) 폐 지: 군정혁신담당관
- 2) 분 리: 보건소 ⇒ 보건소(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3) 명칭변경
 - 가) 기획감사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나) 민원봉사과 ⇒ 열린민원과
 - 다) 체육진흥과 ⇒ 스포츠산업과
 - 라) 일자리경제과 ⇒ 경제기업과

나. 본청 보좌기관의 설치 (안 제4조)

다. 본청 국별 소관부서 및 사무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보건소내 소관부서 신설(안 제10조 ~ 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추진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군정책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사무를 관장한다” 로 개정한다.

제4호제3항을 “인구청년추진단은 인구정책,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협력사무를 관장한다” 로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민원봉사과” 를 “열린민원과” 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 통신” 을 “지방분권,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 통신” 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의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 을 “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 으로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의 “체육진흥과” 를 “스포츠산업과” 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일자리경제과” 를 “경제기업과” 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의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관제센터” 를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관제센터” 로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의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를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원” 로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1조제2항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을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 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인구청년추진단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④ 고성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장”으로 한다.

⑥ 고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⑨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 ⑩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⑪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 ⑫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⑬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열린민원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 ⑮ 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⑯ 고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 ⑰ 고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⑱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⑲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⑳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 ㉑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진흥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 ㉒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 ㉓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㉔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한다.

㉕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일자리경제과장” 을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㉖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 을 “열린민원과장” 으로 한다.

㉗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를 “별표 1” 로 하고, “민원봉사과” 를 “열린민원과” 로 한다.

㉘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체육진흥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을 “스포츠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㉙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을 “경제기업과장”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고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u>국장·담당관·과장</u> 의 직급과 <u>담당관·과</u> 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 -- <u>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u> 의 ----- <u>담당관·추진단·과</u> ----- -----.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u>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u> 을 둔다. ② <u>군정혁신담당관</u> 은 <u>혁신, 정책공보, 주민참여, 인구청년정책사무</u> 를 관장한다. ③ <u>기획감사담당관</u> 은 <u>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u>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① ----- <u>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u> ----- ----. ② <u>기획예산담당관</u> 은 <u>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u> -----. ③ <u>인구청년추진단</u> 은 <u>인구정책,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협력</u> ----- -----.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u>민원봉사과</u> 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u>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통신</u>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5. <u>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u>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 ① ----- ----- ----- <u>열린민원과</u> 를 둔다. ② -----. 1. <u>지방분권,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통신</u> ----- ----. 2. ~ 4. (생 략) 5. <u>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u> -----.
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문화관광과, <u>체육진흥과, 환경과, 해</u>	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문----- ----- <u>스포츠산업과</u> -----

양수산과, 녹지공원과를 둔다.

1. ~ 3. (생략)

제6조(산업건설국) ① 산업건설국에 일 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를 둔다.

1. (생략)

2.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생략)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

1. ~ 3. (생략)

제6조(산업건설국) ① -----경제 기업과, -----.

1. (생략)

2.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관제센터-----

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원-----

제10조(설치)

① ~ ② (생략)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④ -----.

제11조(소장 등)

① (생략)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직을 기능적 재배치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

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49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행정기구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직급 조정

당초		변경	
부서	직급	부서	직급
기획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기획예산담당관	좌동
군정혁신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인구청년추진단	좌동
민원봉사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열린민원과	좌동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스포츠산업과	좌동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경제기업과	좌동
농업기술과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농업기술과	지방농촌지도관

당초		변경	
축산과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축산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농식품유통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농식품유통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지방농촌지도관
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보건소	지방기술서기관, 지방서기관
<신설>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신설>		건강증진과	지방의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하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하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나. 본청 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조정 [별표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 인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 (055)670-2092, 팩스: (055) 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인사담당 [전화: (055)670-2092]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담당관”을 “담당관 및 추진단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를 “(본청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제1호의 “민원봉사과장”을 “열린민원과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2호의 “체육진흥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개정한다.

- ④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 “담당관”을 “담당관·추진단”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열린민원과장”으로 한다.

③ 고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고성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제1항, 제5조제2항제2호, 제5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고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 <u>담당관</u> 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u>담당관 및 추진단장</u> ----- ----- -.
제4조(본청 국장· <u>담당관</u> ·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제4조(----- <u>담당관</u> · <u>추진단장</u> -----) ----- --.
1. ----- <u>민원봉사과장</u> ----- -----.	1. ----- <u>열린민원과장</u> ----- -----.
2. ----- <u>체육진흥과장</u> ----- -----.	2. ----- <u>스포츠산업과장</u> ----- -----.
3. ----- <u>일자리경제과장</u> ----- -----.	3. ----- <u>경제기업과장</u> ----- -----.
4. <u>군정혁신담당관</u> : <u>군정혁신담당관</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시설사무관</u> 으로 보한다.	4. <u>기획예산담당관</u> : <u>기획예산담당관</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u>지방시설사무관</u> -----.
5. <u>기획감사담당관</u> : <u>기획감사담당관</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u>지방시설사무관</u> 으로 보한다.	5. <u>인구청년추진단</u> : <u>인구청년추진단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시설사무관</u> -----.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② <u>농촌정책과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u>농업기술과장</u> 은 <u>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u>축산과장</u> 은 <u>지방농업사무관</u> · <u>지방수의사무관</u> 또는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u>농식품</u>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② <u>농촌정책과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농업사무관</u> 또는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u>농업기술과장</u> 은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u>축산과장</u> 은 <u>지방행정사무관</u> · <u>지방농업사무관</u> · <u>지방수의사무관</u> 또는 <u>지방농촌지도관</u> 으로, <u>농식품</u>

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③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 ④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 ⑤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분청 담당관 · 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

- ② 분청 담당관 · 과, 직속기관, 사업

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 ③ -----
--지방서기관-----.

- ④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 지방간호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⑤ -----

-----.

- ⑥ -----

-----.

제8조(분장사무 등) ① -----담당관 · 추진단-----
-----.

- ② -----담당관 · 추진단-----

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현 행)

읍·면장의 직급 (제7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사무소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일면사무소	하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이면사무소	하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리면사무소	상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사무소	대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현면사무소	영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오면사무소	영오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천면사무소	개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구만면사무소	구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회화면사무소	회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암면사무소	마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류면사무소	거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안)

읍·면장의 직급 (제7조 관련)

읍·면사무소명	직 위	직 급
고성읍행정복지센터	고성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사무소	삼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일면사무소	하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이면사무소	하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리면사무소	상리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사무소	대가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현면사무소	영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오면사무소	영오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천면사무소	개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구만면사무소	구만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회화면사무소	회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암면사무소	마암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류면사무소	거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현 행)

본청 담당관 · 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제8조 관련)

1. 담당관

부서	분장사무
군정혁신 담당관	1. 군민의식개혁, 혁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주민참여, 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총괄 5. 인구정책, 청년정책,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 담당관	1. 군정 기획조정 · 분석평가 · 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경영개발 및 수익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 · 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기관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조례 및 규칙의 제정 · 개폐, 통계조사 · 연보발간, 행정소송 · 심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 정 과	1.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동향관리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지, 기록관 운영, 공인,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분 제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 무 과	1.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군세 징수 및 납부홍보, 군 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3.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납징수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다문화에 관한 사항 4.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청소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발전기금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보육·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개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사무 지도·감독 및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6.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국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1.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문화 부문)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성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	1.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
환경과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관리(구거 제외), 유·도선(내수면)장 관리 4.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어촌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에 관한 사항 6. 해난안전에 관한 사항

녹지공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 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2.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산불 방지, 산지 정화 3. 등산로 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 조성 등 산지자원개발 및 소득에 관한 사항 4. 도립공원, 도시·녹지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4. 산업건설국

부서	분장사무
일자리경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통상·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석유·가스·전기·계량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특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지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9. 조선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0.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재시설물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민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도시교통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건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개설,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5.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항 6. 하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건축개발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행정, 건축관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과 추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지, 산지전용 허가·신고 5. 개발행위 인·허가 6. 각종 인·허가 업무(복합민원 등)

5.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촌정책과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및 농촌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11. 지역행복생활권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	1.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수화훼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채소특작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실증시험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분뇨처리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동물복지 및 곤충산업 관리 3. 가축전염병 관리, 예방주사, 안전축산물 생산 4. 축산위생업소 허가·신고 관리, 공수의 관리, 미생물 배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축산혁신 공모사업,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지원, 낙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 고급육 생산, 개량사업,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양계 육성 사업 9.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및 지도
<p>농식품 유통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및 농식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문화사업의 계획 및 평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출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

본청 담당관·추진단·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제8조 관련)

1. 담당관·추진단

부서	분장사무
<p>기획예산 담당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경영개발 및 수익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기관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행정소송·심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군민의식개혁, 혁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8. 공모사업 총괄
<p>인구청년 추진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정책, 인구증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정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국

부서	분장사무
행 정 과	1.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동향관리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지, 기록관 운영, 공인,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분 제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분권, 주민참여,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재 무 과	1.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군세 징수 및 납부홍보, 군 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3.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납징수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p>복지지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다문화에 관한 사항 4. 장묘문화 및 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p>교육청소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발전기금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보육·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p>열린민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개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인감·가족관계등록사무 지도·감독 및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6.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국

부서	분장사무
문화관광과	1.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날 행사(문화 부문)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고성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야사 복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 산업과	1.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
환 경 과	1.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관리(구거 제외), 유·도선(내수면)장 관리 4.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어촌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에 관한 사항 6. 해난안전에 관한 사항
녹지공원과	1.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

	<p>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p> <p>2.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산불 방지, 산지정화</p> <p>3. 등산로 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 조성 등 산지자원개발 및 소득에 관한 사항</p> <p>4. 도립공원, 도시·녹지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관리에 관한 사항</p> <p>5.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p>
--	--

4. 산업건설국

부서	분장사무
경제기업과	<p>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p> <p>2. 통상·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에 관한 사항</p> <p>3.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4. 노동조합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p> <p>5. 석유·가스·전기·계량에 관한 사항</p> <p>6.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p> <p>7. 산업단지·특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p>8. 중소기업 지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p> <p>9. 조선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p> <p>10.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p>
안전관리과	<p>1.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2. 방재시설물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p> <p>3.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p> <p>4. 민방위에 관한 사항</p> <p>5.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민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9.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6. 고속철도 건설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건 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개설,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5. 도로 점·사용에 관한 사항 6. 하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건축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행정, 건축관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과 추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지, 산지전용 허가·신고 5. 개발행위 인·허가 6. 각종 인·허가 업무(복합민원 등)

5. 농업기술센터

부서	분장사무
농촌정책과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및 농촌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11. 지역행복생활권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	1.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수화훼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채소특작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실증시험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분뇨처리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동물복지 및 곤충산업 관리 3. 가축전염병 관리, 예방주사, 안전축산물 생산 4. 축산위생업소 허가·신고 관리, 공수의 관리, 미생물 배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축산혁신 공모사업,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지원, 낙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 고급육 생산, 개량사업,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양계 육성 사업 9.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및 지도
<p>농식품 유통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산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및 농식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문화사업의 계획 및 평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출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의 조직의 직급 불부합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 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51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사전적·확실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하여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상위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명칭인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 정비(제명 및 안 제1조~제6조)
- 나.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사전적·확실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 삭제 (안 제9조)
-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 2) 전화: (055)670-2223, 팩스: (055) 670-22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1)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전화: (055)670-2223]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를 “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의”를 “국가무형문화재의”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2571와”를 “2571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5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6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타인에게 전대 또는”을 “다른 사람에게”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기타서류”를 “기타 서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 <u>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중요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한 <u>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전수교육관”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u>중요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생 략)</p> <p>제3조(위치) 고성군 <u>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571와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7길 26에 둔다.</p> <p>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u>중요무형문화재</u>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2. <u>중요무형문화재</u> 후계자 양성에 관</p>	<p><u>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 <u>관리·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국가무형문화재</u>의 ----- ----- ----- <u>국</u> <u>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 ----- -----.</p> <p>제2조(정의) ----- -----.</p> <p>1. ----- <u>국가무형문화재</u>-----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치) ----- <u>국가무형문화재</u> ----- ----- ----- <u>2571과</u> ----- -----.</p> <p>제4조(업무 및 기능) ----- -----.</p> <p>1. <u>국가무형문화재</u> ----- -----</p> <p>2. <u>국가무형문화재</u> -----</p>

한 사항

3.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5. (생략)

제5조(운영) 군수는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중요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략)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

3. 국가무형문화재-----

4. 5.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 -----
-- 국가무형문화재 -----
-----.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 국가무형문화재-----

-----.

제8조(위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항은 -----
-----.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른 사람에게 ---

----- 운영에 ---
-----.

제10조(지도 감독) ① ----- 소속 직원-----

----- 기타
서류 -----

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54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가.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나. 사전적·확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탁자 전대금지 조문 정비: 사전적·확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 고성군청 체육진흥과
- 2) 전화: (055)670-5845, 팩스: (055) 670-47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체육진흥과 (전화 055-670-58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양도하거나 전대” 를 “양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양도의 금지)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u>양도</u>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0조(양도의 금지) ----- ----- <u>양도</u>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정 상 호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6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9. 5.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며, 국민원익위원회의 참전유공자보훈명예수당 신청방법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가. 사망위로금 지급을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포함(안 제5조2항)
- 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보훈격려금 5만원 지급(안 제5조제3호)
- 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요건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명시(안 제6조제2항)
- 라.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청절차 없이 지급(안 제7조)
- 마. 보훈격려금 지급 시기 규정(안 제8조제4항)

3. 의견 제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주민생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2) 전화: (055)670-2352, 팩스: (055) 670-23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055-670-23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이하 “참전유공자” 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이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소” 를 “주민등록법 상 주소”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망위로금(이하 “명예수당” 을 “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이하 “보훈명예수당”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망위로금

가. 참전유공자: 50만 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이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중 선순위자” 라 한다): 50만 원

3. 보훈격려금: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 원

제6조제1항 본문 중 “보훈명예수당” 을 “보훈명예수당 등” 으로, “주소” 를 “주민등록법 상 주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보훈명예수당” 을 “보훈명예수당 등”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로 한다.

-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할 수 있다.
-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토요일,공휴일” 을 “토요일, 공휴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훈격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 추석: 해당일로부터 15일 이내

2. 호국보훈의 달: 6월 1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제9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를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격려금의 지급 중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명예수당” 을 “보훈명예수당 및 보훈격려금”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훈명예수당의 환수)” 를 “(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 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 1.>(개정)

<앞 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보훈번호	- -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대폰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예금계좌)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u>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u></p> <p>2.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 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이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라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고성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고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제3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 ----- <u>주민등록법 상 주소</u>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u>사망위로금(이하 “명예수당 등”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생 략)</p> <p>2. <u>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50만 원</u></p>	<p>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 ----- ----- -- <u>사망위로금, 보훈격려금(이하 “보훈명예수당 -----.</u></p> <p>1. (현행과 같음)</p> <p>2. <u>사망위로금</u></p>

<신 설>

② (생 략)

제6조(지급대상자 요건) ①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당사자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사망일 현재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로 한다.

③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하고, 이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참전유공자: 50만 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이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중 선순위자”라 한다):
50만 원

3. 보훈격려금: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각 5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대상자 요건) ① 보훈명예수당 등----- 주민등록법 상 주소-----
-----.

<삭 제>

② ----- 보훈명예수당 등-----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

다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에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② (생 략)

③ 군수는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신 설>

제9조(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대상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

-----토요일, 공휴일-----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보훈격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 추석: 해당일로부터 15일 이내
- 2. 호국보훈의 달: 6월 1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제9조(보훈명예수당 및 보훈격려금의 지급중지) -----

<p>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u>보훈명예수</u> <u>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u></p> <p>1. ~ 3. (생 략)</p> <p>제10조(<u>보훈명예수당의 환수</u>) (생 략)</p> <p>제12조(<u>시행규칙 등</u>)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 <u>보훈명예수당 및 보훈</u> <u>격려금</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u>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u>) (현행 과 같음)</p> <p><삭 제></p>
---	--

붙 임

비용추계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항: 제5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제1항

나. 관련조문: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보훈격려금(이하 “보훈명예수당 등” 이라 한다),_설.추석 및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격려금(이하 “격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체

1) 사업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등 1,000명 (2022.9.1.기준)

2) 사업규모: 보훈격려금, 사망위로금

- 2023년: 165,000천 원

▶보훈격려금(설추석 및 보훈의 달): 150,000천 원(1,000명×50천 원×3회)

▶사망위로금: 15,000천 원(30명×500천 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군비	165,000	160,500	156,000	151,500	147,000	780,000
세입	군비	165,000	160,500	156,000	151,500	147,000	78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 2027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재원 조달	의존재원						
	자체재원	165,000	160,500	156,000	151,500	147,000	780,000
	기 타						
	소 계	165,000	160,500	156,000	151,500	147,000	780,000

작성자: 주민생활과장 박 원 철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21., 2019. 12. 10.>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5. 21.>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5. 12. 22.>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2-15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31.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고성읍 죽계리 711-335	고성읍 남해안대로 2840-79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남해안 자연지명 활용	
2	하이면 봉현리 28-1	하이면 봉현4길 66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 봉현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3	구만면 저연리 477-3	구만면 저연4길 10-38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구만면 저연리)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	
4	고성읍 월평리 299	고성읍 월평1길 130-13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월평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5	영현면 영부리 782-2	영현면 영부1길 85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현면 영부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6	동해면 내곡리 380-4	동해면 내곡안길 106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내곡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하일면 용태리 326-12	하일면 자란만로 1970	2022.08.31.	건물번호부여신청	하이면 ~ 삼산면 해안에 걸쳐진 자란만(해안이름)의 이름을 활용하여 부여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관할구역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1	영현면	영부1길 85	2022.08.31.	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	

